GOLF 會員券 賣買契約書

- 會員券名 :
- 會員番號 :
- 會員姓名 :
- 會員區分 : 個人 / 法人

上記 골프會員券을 讓渡者와 讓受者간에 賣買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契約(締結)한다.

第1條 代金支給의 方法

讓受人은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讓渡人에게 代金을 支給한다.

代金總額 : 一金 원정 (₩)

契 約 金 : 一金 원정을 締結當時 支給

殘 金 : 一金 원정을 20 年 月 日 支給함.

第2條 名義改書의 方法, 節次

第1項 : 讓渡人은 殘金 受領時 讓受人에게 所有權 移轉에 필요한 名義變更 書類一體를 교부하여야 하며 名義改書 節次에 誠實히 協助하여야 한다.

第2項 : 名義改書費는 讓受人 負擔이다.

第3條 讓渡, 讓受人의 責任과 限界

第1項 : 讓受渡시 押留등과 같은 問題와 이로 인한 契約破棄 등 諸般問題에 관한 責任은 名義改書日을 基準으로 判斷한다.

즉, 名義改書日 以前의 原因提供 및 發生事實에 대하여는 讓渡人에게 그 責任이 있으며 以後에 대하여는 讓受人에게 그 責任이 있다.

第2項 : 讓渡書類의 未備, 會員券의 押留등 瑕疵로 인하여 名義改書가 不可能하게 되는 境遇에는 本 契約은 當然히 無效가 되며, 이때 讓受人의 還拂要求에 대하여 讓渡人은 지체 없이 全額을 還拂하여야 한다.

第3項 : 立會人은 본 契約의 當事者가 아니므로 會員券의 瑕疵, 去來節次上의 문제로 인한 契約파기 등 기타 본 契約으로 인한 一體의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한다.

第4項 : 讓渡人과 讓受人은 會員券, 賣買代金의 수수, 所有權 이전에 必要한 關聯 서류 一體의 수수에 관한 代理權을 立會人에게 委任한다.

第4條 其他

第1項 : 會員券 讓渡日 以前에 發生한 公課金 및 管理費 등의 滯納額一體는 讓渡人의 負擔이다.
(단, 別途의 約定이 있을 境遇 그에 따른다)

第2項 : 其他 본 契約書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會員券 業界의 一般慣行에 따라 행한다.

20 年 月 日

讓 渡 人 住 所 :
住民登錄番號 :
姓 名 : (印)

讓 受 人 住 所 :
住民登錄番號 :
姓 名 : (印)

立 會 人